

소규모 합병 공고

(주)이도는 (주)굿모닝씨오엠과(와) 2019년 04월 19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이도가 (주)굿모닝씨오엠을(를) 흡수합병 함.
2. 합병비율 : (주)이도: (주)굿모닝씨오엠 = 1 : 0.000
3. 소멸회사의 현황
 - 가. 상호 : (주)굿모닝씨오엠
 - 나. 본사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매송고색로 375번길 5-1, 2동(근생)
4. 합병기일 : 2019년 8월 29일
5. (주)이도와 (주)굿모닝씨오엠과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 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 가. 행사절차 : 2019년 05월 03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 나. 기간 : 2019년 05월 04일 ~ 2019년 05월 17일
 - 다. 행사방법 및 장소
 - * 2019년 05월 17일까지 (주)이도 재무회계팀에 제출(우편 또는 팩스)
 -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20층(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주)이도 주식담당자 앞
(Tel : 02-2084-2215, Fax 02-2084-2249)
 -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이사회 결의 반대 의사표시 통지서

(주)이도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주)이도와 (주)굿모닝씨오엠과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 주 번 호	주 주 명
소유주식 종류	소유주식 수

2019년 05월 일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2019년 04월 19일

주식회사 이도 대표이사 최 정 훈